
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 - 055호

2024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『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사업』 초기(예비)창업자 모집
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혁신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(예비)창업자의 발굴 및 지속·자립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『2024년 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사업』에 참여 할 초기(예비)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7월 5일
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

1. 사업개요

☐ 사업목적

- 혁신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 등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 발굴 및 지원으로 창업촉진 및 지역 기반의 자립형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
- 창업교육, 시제품제작을 위한 사업화자금, 창업공간 등 지원으로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향상 및 지역 정착여건 마련

☐ 사업기간

- 협약일 ~ 2024. 12. 20.(금)

☐ 지원규모

- 예비창업자 및 초기(업력3년이내) 창업자 10개사(팀) 내외

□ 지원내용

- (창업교육)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대상: 선정기업(팀) 전체
- (컨설팅 및 네트워킹) 창업전문가 컨설팅, 주요 투자자 및 선배 창업가 네트워킹 기회 제공
 - 대상: 선정기업(팀) 전체
- (시제품 제작지원) 제품화 가능성 및 시장 반응 사전 조사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 - 대상: 참여기업 10개사(팀) 중 4개사(각5,000천원 내외) 지원
- (고객검증) 고객의 실제 필요와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고객검증지원
 - 대상: 시제품제작 지원기업 중 2개사(각4,000천원 내외) 지원

□ 지원자격

-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 소재 학교를 재학 중인 자
- 세종시 본사 소재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(공고일 기준)
 - ※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
- 신청제한
 - 과년도 센터 지원사업 기간 중 불성실 혹은 실패 판정기업
 - 과년도 센터 지원사업 종료 후 실적자료 미제출 기업

2. 지원절차



3. 신청방법

- ☐ 공고기간: 2024. 07. 05.(금) ~ 2024. 07. 19.(금) 까지
- ☐ 접수기간: 2024. 07. 15.(월) ~ 2024. 07. 19.(금) 까지
- ☐ 제출서류

구분	항목	제출서류 목록
필수 서류	신청서 및 계획서	서식1.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
	참가서약서	서식2. 참가서약서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서식3. 개인정보활용동의서
	(창업기업) 관내소재여부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
	(예비창업자) 관내거주여부	신분증(or 주민등록등본) 및 재학증명서
	(창업기업) 4대보험가입자명부	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	(예비창업자) 팀원확인서	팀원 확인서 및 팀원 신분증 사본(or 재학증명서)
해당시 제출서류	매출규모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2021년~2023년)
	산업재산권	신청예정 사업아이템 관련 특허등록(출원)증 등
	투자유치여부	투자계약서 등(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)
	가점사항	여성기업(여성기업확인서), 청년창업가(만39세 이하 신분증)

- ☐ 신청방법: 온라인(이메일) 접수 sejong-stup@ccei.kr
※ 접수 후 아래 문의처로 접수 확인 필수

4. 문의처

- ☐ 문 의 처: 창업보육팀 사업담당자 044-999-0239 / 1026

5. 유의사항

☐ 신청 · 선정 취소

- 신청 제한 대상기업인 경우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
- 신청서류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시 신청 및 선정취소가 될 수 있음
-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
- 최종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☐ 기타사항

- 창업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1년(~'25.12.31.(화)) 이내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 시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
- 타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당사자가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
-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과실(불이익)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-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『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』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